

의안 번호	2416	【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 심사보고서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5. 2.(금)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5. 2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5. 15.(목)

2. 제안설명 요지(복지교육국장 김미정)

가. 제안이유

-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26조제2항(협의 및 조정)과 관련하여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·변경 협의 진행 결과 기존 현금성수당이 아닌 물품 지원으로 제도 변경 요청한바, 이에 해당 조례를 정비·보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제명 개정
 - (현행) 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
 - (개정) 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
- ‘장수축하금’ 을 ‘장수축하물품’ 으로 변경(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)
- 지급대상의 중구 거주기간 요건을 ‘5년’ 에서 ‘1년’ 으로 완화(안 제3조)
- 장수축하금 ‘지급금액’ 을 장수축하물품 ‘지급내용’ 으로 변경(안 제4조)
 - 예산 범위 내 장수축하금 → 50만원 이내 장수축하물품
- 장수축하물품 신청안내 기간을 ‘100세가 도달하는 전월 말’ 에서 ‘100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까지’ 로 변경(안 제5조)
- 신청 후 지급기한을 ‘송부받은 달의 15일 이내’ 에서 ‘송부받은

날로부터 1개월 이내’ 로 변경(안 제6조)

- 지급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수축하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장수축하금 또는 물품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장수축하물품 지급 제외 조건 신설(안 제7조)
- ‘장수축하금’ 을 ‘장수축하물품’ 으로 변경함에 따른 관련 서식 정비(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)

다. 근거법규

-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26조
-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순정)

- 「사회보장기본법」제2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.
- 우리 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(2023. 12월.)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 결과 현금성 수당이 아닌 물품 지원으로 변경 요청하여 이에 따라 ‘장수축하금’ 을 ‘장수축하물품’ 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- 본 개정조례안은 ‘장수축하금’ 을 ‘장수축하물품’ 으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조문, 별지서식에 포함된 ‘장수축하금’ 용어와 내용을 ‘장수축하물품’ 으로 정비하고,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, 신청안내 기간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
-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거법규

「사회보장기본법」

- 제26조(협의 및 조정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,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, 재원의 규모·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, 기존 제도와의 관계,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,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「노인복지법」

- 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